

분 변동의 경우"로 함.

6. 심사결과

○수정가결(참석 10명 전원일치)

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
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8. 10
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○199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

○1998년 10월 2일

다. 상정일자

○제10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1998.
10. 16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교통관리실장
차동득)

가. 제안이유

○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
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
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조례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태호)

○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
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크게 7개 지역
(4대문 주변지역, 신촌지역, 영등포지역,
영등지역, 잠실지역, 천호지역, 청량리지
역)으로 분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
및 시설의 도심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,
'86. 6.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'93. 7.에 한
번 개정되었음.

○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(교통
영향평가 및 심의)
"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
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
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통영
향평가 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
영향평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"라고 규정
하고 있으며

○동법 제2조제3의2호

"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상주인구 10
만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
활권에 있는 지역"으로 규정하고 있음.

○또한 동법시행령 제13조(교통영향평가 및
심의의 대상)

"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
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 1
과 같다.

<별표 1>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
업 및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
고 있음.

○따라서 본 조례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 폐
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관련법
조항이 '95.12.과 '96.6.에 각각 개정되었
으므로 조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
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
4. 질의답변 요지

○없음.

5. 심사결과

○전원일치 원안가결(참석 10명, 찬성 10명)

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
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
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중 "위원장,"을 "위원장은
행정(2)부시장으로 하고"로 한다.

조례 제4조제1항 중 "2년"을 "1년"으로 한다.

안 제6조의 제목("소위원회")를 (현행대로 하기
위하여) "(분과위원회)"로 하고, 동조제1항
중 "소위원회"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
"버스정책·서비스개선·경영합리화 등 전문
분야별로 분과위원회"로 하며, 동조제2항 중
"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"을 (현행대로 하기
위하여) "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 및 분과위
원장 선출"로 하고, 동조제3항 중 "소위원
회"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"분과위원
회"로 한다.

안 제7조에 제3항을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
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
과위원장이 소집한다.

조례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위원의 신분변동의 경우

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